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건번호 : 2002 진차 47

사 건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교원임용 차별

진 정 인 : 이 ○ ○

피진정인 : ○○○○고등학교
교장 허 ○ ○

피진정인 :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주 문

1. 피진정인 ○○○○고등학교장이 진정인을 교원으로 임용제청하지 않은 행위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한다.

2. 피진정인 ○○○○고등학교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진정인을 학교법인 ○○학원 이사회에 임용 제청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국가정보원장이 신원조사 회보에 있어 사면·복권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통보하게 한 관행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게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정한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한다.

4. 피진정인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등은 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정한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은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통보하지 않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가. 진정인은 1992. 3월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 인문대학에 입학하여 2001. 2월 졸업한 자로, 1999. 10. 8.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받아 2000. 8. 15. 특별사면·복권된 사실이 있고, 2002학년도 ○○○○고등학교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신원조사 결과 위 사실이 밝혀져 교원 임용에서 탈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며, 이미 관계 법률에 정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아 이종의 피해를 본 것이라며, 2002. 4. 24.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피진정인 ○○○○고등학교장은 학교법인 ○○학원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장으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임용 제청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자이다.

다. 신원조사제도 부분에 있어 진정인은 신원조사 결과를 회보한 경남 ○○경찰서장을 피진정인으로 지정하였으나, ○○경찰서장은 보안업무규정 제 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결과를 통보만 하였을 뿐이므로, 신원조사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등을 피진정인으로 지정하여 신원조사제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은 신원조사 회보에 있어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은 통보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통보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이종의 피해를 입게 한 것이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사면·복권된 경우 공립학교 교원은 임용된 반면에 사립학교 교원은 그 임용기준을 달리 정하여 임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고등학교장은 교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감독기관인 경남교육청에 신원조사회보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임용에 필요한 구

비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원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그 결과는 서류 심사에 참고만 할 뿐이며, 교원임용은 당사자와의 면접 등을 통하여 인성과 자질이 교사로서 적격한지 여부와 본교 건학이념에 부합된 사람인가를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한번 임용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근무하게 되어 임용 예정자의 인성 등을 매우 중요시하여 선발하고 있는 바, 진정인은 학교장의 서류 심사 및 면접 결과 교사로서의 인품과 자질이 본교 건학이념과 부합되지 않아 임용제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진정인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 납득을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 경찰청장은,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신뢰성 등을 조사하는 등 임용대상자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으로,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1항에 의거 대상자의 국가관, 성실소행, 대인관계, 특이사항 등을 기재하며,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이므로 형의 실효나 사면·복권된 사실과는 별개 사안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그 결과는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신원정보의 제공일 뿐으로 신규임용이나 승진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지 여부는 인사 결정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임을 명시하여 회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라. 피진정인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기관의 장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으므로 형의 효력이 실효되거나 사면·복권된 경우라도 이를 회보할 수 있고, 신원조사 결과를 신규임용이나 승진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지 여부는 결정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특히 보안업무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을 통보하는 것은 인사권자가 신원조사대상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신뢰성 등과 관련하여 인사업무에 참고하도록 한 것일 뿐이므로 신원조사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위원회의 조사내용

가. 진정인 진술서, 피진정인 ○○○○고등학교장의 진술조서, 경남교육청에서 제출한 각 관련자료,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회신,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 의견서 및 참고인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을 임용제청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가) 진정인이 학교법인 ○○학원에서 실시한 ○○○○고등학교 교원 신규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실

(나) 학교법인 ○○○○학원의 교원임용규칙 제5조 단서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실

(다)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이 2002. 2. 1. 진정인의 신원조사를 ○○경찰서장에게 의뢰하여 같은 달 19일 신원조사회보서를 접수한 사실

(라) 2002. 2. 21.경 피진정인 ○○○○고등학교장이 진정인에게 임용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실

(마) 피진정인 ○○○○고등학교장이 학교법인 ○○학원 이사회에 진정인에 대한 임용제청을 하지 않은 사실

(바) ○○○○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인 경남교육청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면서 피진정인에게 교원임용규칙 제5조 단서규정 때문에 진정인을 임용제청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은 사실

(2) 사면·복권된 전과를 통보하여 취업에 불이익을 받게 한 것은 이중 처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가) 경남○○경찰서장이 2002. 2. 5.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으로부터 진정인의 신원조사를 의뢰받아 같은 달 16일 회신한 사실

(나) 진정인이 1999. 10. 8.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받아 2000. 8. 15. 특별사면·복권된 사실

나. 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2)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립학교 교원 임용관련 규정

○ 사립학교법제52조 :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 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사립학교법제53조의 2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 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사립학교법제53조의 3

① 각급학교의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제57조 :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 교육공무원법제10조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 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서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 어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제33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학교법인 ○○학원 정관 제77조(임면)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학교법인 ○○학원 정관 제8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 학교법인 ○○학원 정관 제8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교법인 ○○학원 교원임용규칙 제5조(교원의 자격) :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준하되 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3) 신원조사제도 관련규정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3조(수형인명부) :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4조(수형인명표)

①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형 실효등과 전과기록의 정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는 이를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① 범죄의 수사 및 재판 외에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 보안업무규정 제31조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②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인가예정자

3.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4.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 등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

○ 보안업무규정 제34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각 조사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정원신원조사업무지침제15조(회보 범위)

① 조사기관의 장은 신원조사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본인의 신원특이 내용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에게 기록 회보하여야 한다.

1.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등 반국가사범으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이상)을 받았거나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사항

2. 북한이탈 또는 남북귀환 관련사항

3. 피 보안관찰자로 편입되어 있는 사항

4. 일반 형사사건 관련으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이상)을 받은 사항

5. 기타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공직임용 및 직무수행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항

②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도 대상자의 신원정보 자료 중 조사목적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충실히 기록·회보하여야 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2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고용 등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4. 위원회의 판단

가. 진정인이 선고받은 전과가 형의 효력이 실효되었는지 여부

(1) 진정인은 1999. 10. 8.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받았으나, 2000. 8. 15. 사면법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된 바, 진정인이 선고받은 형의 효력은 이미 실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진정인이 신고받은 범죄 사실이 학교법인 ○○학원의 교원임용
규칙 제5조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

(1) 대법원이 1997. 7. 22. 선고한 판결 내용에 의하면(96도2153)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정한 재심청구에 있어,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미 재심 청구의 대상(유죄판결)이 존재하지 아니 한다』고 한 바, 진정인은 사면·복권으로 인해 이미 유죄를 신고 받은 판결이 있지 않은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하며,

(2) 2002. 8. 23. 선고한 대법원 판결(2000다64298)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란 사면 등으로 인하여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때”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 바, 진정인이 이미 사면·복권된 이상 학교법인 ○○학원의 교원임용규칙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진정인이 교원 신규임용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하여

(1) 피진정인 ○○○○고등학교장은 진정인에 대한 서류심사 및 면접 결과 교사로서의 인품과 자질이 학교 건학이념과 부합되지 않아 임용제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피진정인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진정인의 면접시험을 위하여 교원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하거나 면접시험을 따로 실시한 사실이 없고, 진정인이 서류를 제출할 때 인사를 겸해 면담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으며, 진정인의 인품과 자질을 판단할 만한 자료 등 면접에 필요한 검토 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3) ○○경찰서장이 보낸 신원조사회보서가 진정인의 평가를 위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되며,

(4) 또한, 2002. 2. 21. 진정인을 면담한 것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인품과 자질을 검토하기 위한 면담이라기보다는 임용제청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기 위한 면담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피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특히, ○○○○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인 경남교육청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확인하면서 피진정인에게 받은 확인서 및 경위서 등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한 규정 때문에 학교법인 이사회에 교원채용을 위한 임용제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한 바, 피진정인이 교원임용규칙 제5조의 규정을 근거로 임용제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라.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은 사적 계약관계로 그 자율성의 보장 여부에 대하여

(1)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의견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행위가 사적 계약관계이므로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이상으로 제약을 가할 수는 있지만, 사립학교가 국민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교원임용 행위가 사적 계약관계라 할지라도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사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하겠고,

(2)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세입 재원 현황을 살펴보면, 설립자인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재정은 연 1%도 되지 아니하고, 대부분 국고 보조금 또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등이 주요 재원이므로, 사립학교를 국민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배제한 채 그 자율성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고등학교 세입재원 현황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학 생 부 담			법인 부담	국 고 보 조 금 등			기타수입	합 계
	사용료 및 수수료	학교운영 지원비	계		국고	기타 (시설비등)	계		
2000년	235,040		235,040 (27.5%)	5,349 (0.6%)	519,034 (60.8%)	93,492 (11.0%)	612,526 (71.8%)	996 (0.1%)	853,911 (100%)
2001년	256,335	243,419	499,754 (40.0%)	1,557 (0.1%)	664,934 (53.1%)	63,592 (5.1%)	728,526 (58.2%)	21,777 (1.7%)	1,251,614 (100%)
2002년	357,934	315,246	673,180 (46.0%)	1,560 (0.1%)	716,198 (49.0%)	40,423 (2.8%)	756,621 (51.8%)	31,272 (2.1%)	1,462,633 (100%)

1. 2000년 및 2001년은 결산액 기준, 2002년은 예산액 기준
2. 2002년 보조금은 도 교육청 내시액 기준
3. 보조금란의 기타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한 학교시설비 및 기타 학교운영경비임
4. 학교운영지원비는 육성회비 회계 등을 통합한 것임(육성회비 및 급식비, 특기교육비, 앨범비 등)

(3) 따라서,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행위를 순수한 사인간의 계약행위로 볼 수만은 없고, 교육기본법에 의한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병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진정인에게 임용제청하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납득을 시켰다고 한 데 대하여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전과 사실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면 진정인이 곤란할 것 같아 진정인에게 사립학교에 임용될 경우 어려운 점 등을 설명하고 공립학교로 갈 것을 설득하여 진정인이 납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2) 진정인은 2002. 2. 21. 피진정인에게 신원조사회보서에 전과 기록이 있어 채용을 할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 이사회의 내규 때문에 이사회에서 통과될 수 없어 임용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으나, 피진정인이 지역사회 유지로서 명망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인상을 피진정인에게 남기기 위하여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나왔을 뿐으로 피진정인의 임용 탈락 통보를 수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앞에서 살펴 본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진정인의 주장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인지 여부

(1)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원회는 피진정인 ○○○○고등학교장이 진정인을 교원으로 신규 임용할 것을 제청하지 않은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2항에 정한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고용 상의 차별 행위」로 인정한다.

(2) 한편,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신규 임용하는 행위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진정인을 교원임용에서 배제시킨 행위가 왜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인성이나 품성, 교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면접시험 등 진정인에 대한 검증 절차도 없이 교원임용을 제청하지 않은 만큼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 신원조사제도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하여

(1)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보안을 위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정한 수사자료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조에 형의 실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8조에 형이 효력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을 정리하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고,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2) 대법원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정한 재심청구에 있어,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미 재심청구의 대상(유죄판결)이 존재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1997. 7. 22. 선고 96도2153)

(3) 신원조사의 근본 취지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신뢰성 등을 조사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인 바,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사면·복권을 해 주는 것은 그 대상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4) 특히 사면법에 따라 특별 사면·복권된 경우, 『형의 선고로 인해 금지되어 있는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이나 공무원 임용 등을 다시 허용하도록 한 관계규정의 법 제정취지』나, 『전과기록을 정리하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고,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도록 한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 등으로 볼 때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을 통보하여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도록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정한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5) 사면·복권된 경우 '일반 형사사건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신원조사회보서에 기재하지 않으면서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의 경우'에만 통보를 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행위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진정인 ○○○○고등학교장이 진정인을 ○○○○고등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임용 제청을 하지 않은 데 대하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헌법 제11조에 정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피진정인에게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진정인의 임용제청 등 평등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원 모집 등과 관련하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피진정인 국가정보원장 등이 신원조사희보서에 사면·복권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통보하도록 한 관행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에 정한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하고, 앞으로 신원조사제도 운영에 있어 사면·복권된 범죄전력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신원조사 희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행의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반대의견 : 유 현 위원

피진정인이 속한 학교법인 ○○학원의 교원임용규칙 제5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선고받은 형의 효력이 실효된 자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제한 없이 획일적이고 원천적으로 고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가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2항이 규정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 사건의 피진정인인 ○○○○고등학교장이 학교법인 이사회에 진정인에 대한 교원임용 제청을 하지 않은 것은 단지 진정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그 자체 때문 만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진정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사실에 의하여 일부 간취될 수 있는 진정인의 품성, 사고방식, 행동양식이 위 학교의 교사로서의 적격과 건학 이념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에 기인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의 교원임용행위는 어디까지나 사적 계약관계이므로 자율성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재량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립학교가 특정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공고하고 교육청에 보고한 행위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사회에 그 사람에 대한 임용을 제청하거나 또는 이사회가 그 사람의 임용을 의결해야 할 법적 구속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 고용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학교장이나 이사회가 어떠한 경로나 사유에 의해서이든 그 임용대상자의 자질이나 인성이 그 학교의 교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임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내용은 오직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만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